제4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인편,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 보호기관,방문요양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별첨1><별첨2>**에 의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별첨1>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등급		수가(원)	본인부담금(15%,원)
3시간 이상	1등급	41,820	6,270
	2등급	38,720	5,800
	3등급	35,740	5,360
	4등급	34,120	5,110
	5등급	32,490	4,870
6시간 이상	1등급	56,060	8,400
	2등급	51,930	7,780
	3등급	47,940	7,190
	4등급	46,300	6,940
	5등급	44,650	6,690
8시간 이상	1등급	69,730	10,450
	2등급	64,590	9,680
	3등급	59,640	8,940
	4등급	58,010	8,700
	5등급	56,360	8,450
10시간 이상	1등급	76,820	11,520
	2등급	71,160	10,670
	3등급	65,750	9,860
	4등급	64,090	9,610
	5등급	62,460	9,360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12,350
	2등급	76,310	11,440
	3등급	70,500	10,570
	4등급	68,860	10,320
	5등급	67,240	10,080

(비급여 항목)

비급여항목	산출근거(일 or 월)	금액(1일)	금액(월31일)
식재료비	1식 4,100원 * 2끼	8,200원	254,200원
간식비	1식 500원 * 2끼	1,000원	31,000원

<별첨2>

2026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구분	이용시간	1~5등급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방문당)	30분이상	17,450	2,610
	60분이상	25,320	3,790
	90분이상	34,120	5,110
	120분이상	43,430	6,510
	150분이상	50,640	7,590
	180분이상	57,020	8,550
	210분이상	63,530	9,520
	240분이상	70,080	10,510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